powerful pohang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pohang 포항시

포 항 시 보

제874호 2012. 3. 13(화)

◀ 입법예고 ▶

ㅇ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12-4호) …… 2
ㅇ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6호) …… 10
ㅇ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제2012-20호) …… 12

◀ 고 시 ▶

ㅇ도로명주소 고시 (제2012-19호) …… 15
ㅇ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제2012-19호) …… 17

◀ 공 고 ▶

ㅇ공 인 공 고 (제2012-381호)…… 15
ㅇ어업권 포기 내용 (제2012-455호) …… 15

회람								

발행 : 포항시 편집 : 홍보담당관(☎270-2233) 190×268 신문용지 70g/m2

입법예고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2 - 4호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영일촌」을 소비자 인지도 향상으로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영일만 친구』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중인 지정상품은 4개류(제29류~제32류) 약1,000종의 개별품목이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될 수 있어 대상품목 지정 조항인 제3조를 삭제

○ 별표 1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디자인을 『영일만 친구』로 변경

3.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상표법」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2. 3. 7 ~ 3. 26(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식품유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농식품유통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603, 팩스 054)270-2650, 이메일springing@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특산물 공동상표(제2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대상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대상품목으로 별표 2와 같다.	제3조 〈삭 제〉
【별표1】 농특산물 공동상표(제2조 관련) 영일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별표1】 농특산물 공동상표(제2조 관련) 영일만친구 포항시장 인증 브랜드 포항
【별표2】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대상 품목 곡류(2종), 두류(2종), 과실류(6종), 서류(2종), 야채류(15종), 버섯류(1종), 화훼류(1종), 가공식품류(15종), 청량 및 과실음료(5종), 축산물(3종), 수산물(4종)	【별표1】 〈삭 제〉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6호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지역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읍·면 행정리의 마을회관과 원거리 또는 지형지물로 인해 마을회관 내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연마을거주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읍·면의 행정리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행정리 지역에 마을회관이 소재하는 자연마을외의 자연마을에 기존 마을회관과의 거리, 자연조건, 도로개설 등으로 필요시 경로당을 겸용한 마을회관을 한 곳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3.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중 “한다. 다만, 150가구를 초과 하는 행정리의 경우에는 신축시 15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를 “하고 150가구를 초과하는 행정리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까지 신축 가능하나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해 추가로 신축하는 경로당용도의 마을회관은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마을회관은 행정리에 1개소 신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용도의 마을회관을 한 곳에 한하여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

1. 행정리가 법정리 단위의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의 마을회관으로 부터 그 거리가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 30세대 이상인 경우

2. 강, 하천등 지형지물과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30세대 이상의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14조 본문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을 설치한다.	**제3조(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구성) ① (생 략)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무) (생 략) 1. ~ 2. (생 략)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5조(임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	**제7조(위원의 해촉)**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해당---------- 2. 해당---------- 3. 해당---------- 4. 그 밖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 ---------- ---------- ---------- 남은 기간----------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 략)	**제8조(간사)** ① ---------- ---------- 1명----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용도) ① (생 략) 1. ~ 7. (생 략)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한 시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11조(시설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마을회관은 행정리에 1개소 신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용도의 마을회관을 한 곳에 한하여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 1. 행정리가 법정리 단위의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의 마을회관으로 부터 그 거리가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65세이상 노인 30세대 이상인 경우 2. 강, 하천등 지형지물과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한다.) 또는 철도등으로 30세대 이상의 마을이 분

현 행	개 정 안
	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50가구를 초과하는 행정리의 경우에는 신축시 15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⑤ ----------하고 150가구를 초과하는 행정리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까지 신축 가능하나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해 추가로 신축하는 경로당용도의 마을회관은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2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계획)** ----------2개월---------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 ④ (생 략)	**제15조(예산회계)** ① ----------그 밖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현 행	개 정 안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20조(사용료 반환)**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2 - 20호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대행업체의 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을 불허하고 신규업체 선정 시 수도공사가 가능한 모든 업체에게 수주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투명하게 대행업체가 선정되도록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변경(안 제1조, 제2조)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를 제12조로 변경

○ 갱신허가를 하지 않기 위하여 “갱신허가” 문구를 삭제(안 제4조제1항)

○ 허가기간 일원화를 위해 한시적 허가기간이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항)

○ 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조항 삭제(안 제4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

3. 관련법령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4.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27709 (2011. 11. 23)」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개선」 권고사항

5. 규칙안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12. 3. 9 ~ 3. 28(20일간)

7. 의견제출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상수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상수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5372, 팩스 054)270-0069, 이메일 handu@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포항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조례 제10조”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이하 “라 한다) 및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이하 “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시 허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포항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1. "시공기술자"라 함은 조례 제10조와 관련한 상수도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2. ~ 3.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① (현행과 같음) 1.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공기술 자격취소 처분)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3조(시공기술 자격취소 처분)**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대행업 허가) ①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이하"라 한다) 및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3,000전단 1개소(단, 구룡포, 청하. 송라면은 읍면당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규 허가시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	**제4조(대행업 허가)** ①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이하" 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1. ~ 7. (생 략)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2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시 허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허가의 유효기간은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표 2의 갱신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삭 제〉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 5. (생 략)	**제5조(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종사원) ① 대행업자는 종사원으로서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7조(종사원)** ① ---------- 1명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비치장부) (생 략) 1. ~ 3. (생 략) 4. 기타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8조(비치장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제9조(신고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표 8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의무)** ① ---------- -- 각호의 어느 하나----------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공 및 착공) ① ~ ⑦ (생 략) ⑧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 및 착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그 밖의 ----------
제15조(급수공사에 대한 통제) 대행업자가 아니면 시의 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단, 시공 도중에 허가를 취소 당하거나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당해 공사에 한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 6.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타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	**제15조(급수공사에 대한 통제)** ---- ---------- ---------- ---------- ----------해당 ------- ---------- **제17조(위반처분)**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2. --- 각 호의 어느 하나----- ---------- 3. ~ 6.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 - 1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7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48-1외 8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49-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48-1	20091201	행정구역명(구룡포읍)을 이용하여 구룡포길로 명명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46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166-5	20090710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7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204번길 41	20091201	일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738, 740-2, 74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204번길 35	20091201	일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892-4, 87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214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68-7, 해도동 51-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91번길 19-7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69-36, 해도동 7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77번길 24-9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7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106	20091201	양학천을 따라 연결된 도로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그랜드맨션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해로 80-16	20091201	행정구역명(대전리)을 이용하여 대전길로 명명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10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로 9	20091201	대송과 철강공단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7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5번길 10	20091201	대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41, 대도동 87-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해로90번길 22	20091201	대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88번길 6-5	20091201	양학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2-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17-3	20091201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 4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2-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17	20091201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 4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2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172번길 18-5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474-7, 27-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152번길 14-3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15-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로 68-1	20091201	행정구역명(상도동)을 이용하여 상도로로 명명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35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송덕로212번길 228-10	20120302	송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6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433	20091201	포항시와 상생을 위해 해병대 1사단의 포항주둔 50주년을 기념으로 해병로로 명명된 도로명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75-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15-1	20091201	행정구역명(문덕리)을 이용하여 문덕로로 명명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 2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100-19	20120305	오천에서 출생하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인명을 이용한 도로명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7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1580번길 30	20091201	장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57-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41	20091201	행정구역명(세계리)을 이용하여 세계길로 명명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7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16번길 21-7	20091201	정몽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4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217번길 12-5	20091201	해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3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360번길 14	20091201	오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340-1, 3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360번길 16-2	20091201	오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2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원로3번길 10-7	20120306	하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3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원로26번길 16-11	20091201	하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0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32	20091201	냉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2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27-1	20091201	냉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산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1392번길 83	20091201	기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73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838번길 60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3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94-1, 494-10, 525, 494-18, 494-20, 494-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105	20091201	동빈내항 운하구간의 옆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산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67번길 90	20091201	해맞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97-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52번길 3	20091201	효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3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56-16	20091201	기동지 저수지를 지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56-14	20091201	기동지 저수지를 지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3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56-12	20091201	기동지 저수지를 지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41-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41-6	20091201	내연산 보경사 군립공원을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리 2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봉화길51번길 9-12	20091201	봉화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3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438번길 74-6	20091201	비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 6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안길58번길 39-9	20120217	사정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7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1133번길 78-72	20111017	비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39번길 26-5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105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옆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9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90번길 30-9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8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6-12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8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6-14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89-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6-16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8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17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24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631번길 49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3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94-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28번길 8	20091201	용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 11B6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45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로 명명	
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09-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13번길 25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4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61번길 16-6	20091201	환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44-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61번길 16-5	20091201	환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7번길 6-12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6	20091201	행정구역명(장량동)을 이용하여 장량로로 명명	
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3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79번길 9-6	20091201	법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2-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해로 70	20091201	대도동과 해도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의 앞글자를 따서 대해로로 명명	
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2-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해로 80-18	20091201	행정구역명(대전리)을 이용하여 대전길로 명명	
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2-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102-4	20091201	양학천을 따라 연결된 도로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3-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80	20091201	양학천을 따라 연결된 도로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78-2	20091201	양학천을 따라 연결된 도로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76번길 5-5	20091201	양학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62번길 17-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62번길 21-5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72번길 22-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62번길 18-6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52번길 17-3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52번길 17-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52번길 16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6	20091201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 4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8-4	20091201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 4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72번길 18-6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5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71번길 31-3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5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62번길 6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5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길 30-27	20091201	행정구역명(미남리)을 이용하여 미남길로 명명	
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15-20, 1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전로 14-2	20091201	옛 지명(학전)을 이용하여 학전로로 명명	
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3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394번길 66-22	20091201	새마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8, 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	20110630	동해안 최초의 국제항만인 영일만항의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20110630	동해안 최초의 국제항만인 영일만항의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고시 제2012 - 19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7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56-12외 3건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종전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3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65-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56-12	2012.02.29	기동지 저수지를 지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65-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56-14	2012.02.29	기동지 저수지를 지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3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65-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256-16	2012.02.29	기동지 저수지를 지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49-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로1178번길 14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48-1	2012.03.05	행정구역명(구룡포읍)을 이용하여 구룡포길로 명명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12 - 381호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1.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 : 2012. 3. 8

2.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증기 추가 구입 및 교체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1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2

□ 등록 공인명 및 인영(붙임1)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제증명포항시남구 해도동장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해도동포항시남구 청장인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제증명포항시남구 효곡동장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효곡동포항시남구 청장인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제증명포항시남구 대이동장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대이동포항시남구 청장인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제증명 양학동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양학동포항시북구 청장인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제증명 두호동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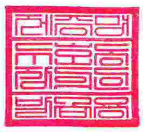	인증기 구입
두호동포항시북구 청장인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제증명 흥해읍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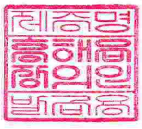	인증기 교체
제증명 기계면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제증명 환여동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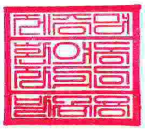	인증기 교체
환여동포항시북구 청장인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 폐기 공인명 및 인영(붙임2)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제증명 흥해읍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로 폐기
제증명 기계면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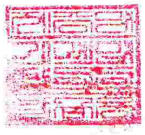	인증기 교체로 폐기
제증명 환여동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로 폐기
FAX민원 기계면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로 폐기
FAX민원 기계면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로 폐기
FAX민원 환여동장의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로 폐기

포항시공고 제2012 - 442호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12

포 항 시 장

1.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 : 2012. 3. 15
2.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증기 추가 구입 및 교체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제증명포항시남구 오천읍장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구입
제증명포항시남구 연일읍장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제증명포항시남구 연일읍장인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로 폐기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2 - 455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 **공고사항**

면허번호		정치망어업면허 영일제1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정 치 망 어 업
어업권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아파트 11동702호
	성 명	서 종 열 외 1명 (서 상 원)
어업면허기간		2002. 12.23.~ 2012. 12. 22.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지선
처분 내역		어 업 권 포 기 (30.6ha)
처분 년 월 일		2012. 3. 13.